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2-85
--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2. 10. 9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 사유

문화와 관광을 조화로이 발전시키고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등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일부 행정 기구를 개편하여 구정 목표인 「더불어 잘 사는 복지 마포」 실현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가. 생활안전과를 폐지하고 안전도시와 재난관리를 통합하여 총무과로 이관하였으며, 문화와 관광의 조화로운 발전과 종교계의 풍부한 지역 자원 협력을 위해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과로 개편하고, 생활체육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과를 신설함. (안 제4조제1항)
- 나.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환경과를 도시관리국으로 이관하고 국 명칭을 도시환경국으로 변경함.(안 제7조제1항)
- 다. 지적과를 도시관리국에서 건설교통국으로 이관하여 국별로 6개과를 둠으로써 인력의 효율적 활용 및 국장의 부서 관리범위를 조정함. (안 제8조제1항)

3. 개정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 (행정기구와 공무원)
- 2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」 제13조
(시·군·구의 기구 설치 기준)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5. 기타 사항

- 가. 입법예고 : 2012. 9.28. ~ 2012.10. 4. (제출의견 없음)
- 나. 자치법규 부폐영향 자율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 (2012.10. 9.)
- 마.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- 바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행정관리국, 기획재정국, 주민생활국, 도시관리국, 건설교통국을 둔다.”를 “행정관리국, 기획재정국, 주민생활국, 도시환경국, 건설교통국을 둔다.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총무과·공보관광과·자치행정과·문화체육과·생활안전과·민원여권과를 둔다.”를 “총무과·공보과·자치행정과·문화관광과·생활체육과·민원여권과를 둔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제38호와 제3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8. 생활체육·건전생활 관련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
39. 종교 및 종교단체 사무에 관한 사항

제5조제2항제22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복지행정과·일자리진흥과·사회복지과·가정복지과·교육지원과·청소행정과·환경과를 둔다.”를 “복지행정과·일자리진흥과·사회복지과·가정복지과·교육지원과·청소행정과를 둔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8호부터 29호까지와 제33호부터 제4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도시관리국”을 “도시환경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도시관리국에 주택과·도시계획과·도시경관과·건축과·지적과·공원녹지과를 둔다.”를 “도시환경국에 주택과·도시계획과·도시경관과·건축과·환경과·공원녹지과를 둔다.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도시관리국장의 분장 사무는”을 “도시환경국장의 분장 사무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1호부터 제

27호까지와 제34호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항에 제43호부터 제5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3. 연료판매소 등록(신고)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
44.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
45. 가스 안전관리 업무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
46. 가스시공업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
47. 지정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
48. 오수, 분뇨 및 정화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
49. 환경보전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
50.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항
51. 물 관리에 관한 사항
52.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측정에 관한 사항
53. 대기오염·수질오염 및 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
54. 소음·진동·악취 및 기타 환경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
55.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
56. 자동차 공해 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

제8조제1항 중 “교통행정과·교통지도과·건설관리과·토목과 및 치수과를 둔다.”를 “교통행정과·교통지도과·건설관리과·토목과·치수과·지적과를 둔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제38호부터 제4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8. 지적업무의 기회 및 조정총괄
39. 지적공부의 관리에 관한 사항
40.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관리
41. 지가조사에 관한 사항
42.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사항
43. 부동산 중개업 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
44.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

제13조제2항 중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서 정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”를 “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서 정한 자치회관의 설치”로 한다.

제15조 중 “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”를 “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”로 하고, “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”를 “법제4조의2제4항의 규정에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구본청의 국·과 간에 소관사무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관사무를 승계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다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1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2항제3호나목 중 “도시관리국”을 “도시환경국”으로 한다.
2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도시관리국장”을 “도시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
3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도시관리국장”을 “도시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
4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도시관리국장”을 “도시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
5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도시관리국장”을 “도시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
6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제1호 중 “도시관리국장”을 각각 “도시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7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제3항 중 “도시관리국장”을 “도시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8. 「서울특별시마포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 및 제7조제3항 중 “공보관광과장”을 “공보과장”으로 한다.
9. 「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제2항 중 “문화체육과장”을 “생활체육과장”으로 한다.
10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1항 중 “생활안전과장”을 “총무과장”으로 한다.
11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4항제4호 중 “생활안전과장”을 각각 “총무과장”으로 하고, 제10조제5항 중 “생활안전과”를 “총무과”로 한다.
12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제8항 중 “생활안전과장”을 “총무과장”으로 하고 제13조제2항 중 “보건소장”을 “행정관리국장”으로 한다.
13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2항 중 “주민생활국장”을 “도시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14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

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주민생활국장”을 “도시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
15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생활복지국장”을 “주민생활국장”으로 하고, 제10조제2항 중 “유통관리팀장”을 “생활경제팀장”으로 한다.

② 이 조례 개정 전에 이루어진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국 및 담당관의 설치) ①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<u>행정관리국</u>, 기획재정국, 주민생활국, 도시관리국, 건설교통국을 둔다.</p>	<p>제3조(국 및 담당관의 설치) ① <u>행정관리국</u>, 기획재정국, 주민생활국, 도시환경국, 건설교통국을 둔다.</p>
<p>제4조(행정관리국) ① 행정관리국에 <u>총무과</u>·<u>공보관광과</u>·<u>자치행정과</u>·<u>문화체육과</u>·<u>생활안전과</u>·<u>민원여권과</u>를 둔다.</p> <p>② 행정관리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~37.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4조(행정관리국) ① <u>총무과</u>·<u>공보과</u>·<u>자치행정과</u>·<u>문화관광과</u>·<u>생활체육과</u>·<u>민원여권과</u>를 둔다.</p> <p>②</p> <p>1.~37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38. 생활체육·건전생활 관련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39. 종교 및 종교단체 사무에 관한 사항</u></p>
<p>제5조(기획재정국) ① (생 략)</p> <p>② 기획재정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~21. (생 략)</p> <p>22. <u>연료 판매소 등록(신고)</u>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</p> <p>23. <u>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</u></p> <p>24. <u>가스 안전관리 업무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</u></p> <p>25. <u>가스시공업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</u></p> <p>26.~41. (생 략)</p>	<p>제5조(기획재정국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</p> <p>1.~21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22. <삭 제></u></p> <p><u>23. <삭 제></u></p> <p><u>24. <삭 제></u></p> <p><u>25. <삭 제></u></p> <p>26.~41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주민생활국) ① 주민생활국에 <u>복지행정과</u>·<u>일자리진흥과</u>·<u>사회복지과</u>·<u>가정복지과</u>·<u>교육지원과</u>·<u>청소행정과</u>·<u>환경과</u>를 둔다.</p>	<p>제6조(주민생활국) ① <u>복지행정과</u>·<u>일자리진흥과</u>·<u>사회복지과</u>·<u>가정복지과</u>·<u>교육지원과</u>·<u>청소행정과</u>를 둔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② 주민생활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~27. (생 략)</p> <p>28. <u>지정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</u></p> <p>29. <u>오수, 분뇨 및 정화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0.~32. (생 략)</p> <p>33. <u>환경보전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4. <u>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5. <u>물 관리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6. <u>생화학적 산소요구량 측정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7. <u>대기오염·수질오염 및 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8. <u>소음·진동·악취 및 기타 환경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9. <u>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</u></p> <p>40. <u>자동차 공해 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</u></p>	<p>②</p> <p>1.~27. (현행과 같음)</p> <p>28. <삭 제></p> <p>29. <삭 제></p> <p>30.~3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3. <삭 제></p> <p>34. <삭 제></p> <p>35. <삭 제></p> <p>36. <삭 제></p> <p>37. <삭 제></p> <p>38. <삭 제></p> <p>39. <삭 제></p> <p>40. <삭 제></p>
<p>제7조(도시관리국) ① 도시관리국에 주택과·도시계획과·도시경관과·건축과·지적과·공원녹지과를 둔다.</p> <p>② 도시관리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~20의3. (생 략)</p> <p>21. <u>지적업무의 기획 및 조정총괄</u></p> <p>22. <u>지적공부의 관리에 관한 사항</u></p> <p>23. <u>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관리</u></p> <p>24. <u>지가조사에 관한 사항</u></p> <p>25. <u>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사항</u></p> <p>26. <u>부동산 중개업 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</u></p>	<p>제7조(도시환경국) ① 도시환경국에 주택과·도시계획과·도시경관과·건축과·환경과·공원녹지과를 둔다.</p> <p>② 도시환경국장의 분장 사무는</p> <p>1.~20의3. (현행과 같음)</p> <p>21. <삭 제></p> <p>22. <삭 제></p> <p>23. <삭 제></p> <p>24. <삭 제></p> <p>25. <삭 제></p> <p>26. <삭 제></p>

현 행	개 정 안
27. 새주소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	27. <삭 제>
28.~33. (생 략)	28.~33. (현행과 같음)
34. 생활체육·건전생활 관련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	34. <삭 제>
35.~42. (생 략) <신 설>	35.~42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43. 연료 판매소 등록(신고)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
<신 설>	44.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
<신 설>	45. 가스 안전관리 업무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
<신 설>	46. 가스시공업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
<신 설>	47. 지정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
<신 설>	48. 오수, 분뇨 및 정화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
<신 설>	49. 환경보전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
<신 설>	50.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항
<신 설>	51. 물 관리에 관한 사항
<신 설>	52.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측정에 관한 사항
<신 설>	53. 대기오염·수질오염 및 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
<신 설>	54. 소음·진동·악취 및 기타 환경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
<신 설>	55.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
<신 설>	56. 자동차 공해 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
제8조(건설교통국) ① 건설교통국에 교통행정과·교통지도과·건설관리과·토목과 및 치수과를 둔다.	제8조(건설교통국) ① 교통행정과·교통지도과·건설관리과·토목과·치수과·지적과를 둔다.
② 건설교통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②

현 행	개 정 안
1.~37. (생 략) <신 설> <신 설> <신 설> <신 설> <신 설> <신 설> <신 설>	1.~37. (현행과 같음) 38. <u>지적업무의 기획 및 조정총괄</u> 39. <u>지적공부의 관리에 관한 사항</u> 40. <u>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관리</u> 41. <u>지가조사에 관한 사항</u> 42. <u>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사항</u> 43. <u>부동산 중개업 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</u> 44. <u>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</u>
제13조(직무) ① (생 략) ② 동장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서 정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관장한다.	제13조(직무) ① (현행과 같음) ②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서 정한 자치회관의 설치
제15조(관할구역)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, 그리고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의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.	제15조(관할구역) 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법 제4조의2제4항 규정에